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5차 부산항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알림

1. 귀 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별·분야별로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5차 부산항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대상자 모집 공고를 알려드리니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우리청(항만물류과)으로 '26.11.20.(금)까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항만운영협약 체결 계획>

(단위 : 개사)

구 분	합 계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 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부산항	14	3 (컨2, 벌크1)	3	2	3	3

가. 접수기간 : '26. 11. 20.(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우리청(항만물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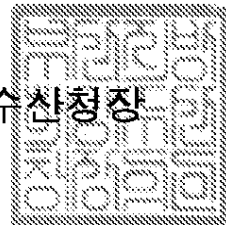
다. 제출서류 : ①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②업종별 등록증, ③업종별 세부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라. 체결기간 : '27. 1. 1.~ '29. 12. 31(3년)

*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내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및 우리청 누리집(www.portbusan.go.kr) 내 「알림소통→알림→공지사항」에 게재 중

붙임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1부.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부산항만물류협회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 한국급유선선주협회장, 부산항만산업협회장, 부산항 등록 항만운송(관련) 사업체(항만하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 고정업) 대표

주무관 **문건호** 행정사무관 **연가** 과장 전결 2026. 10. 23. **최영인**

협조자

시행 항만물류과-10275 (2026. 10. 23.) 접수

우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1층 항만물류과 / <https://busan.mof.go.kr>

전화번호 051-609-6445 팩스번호 051-609-6419 / homoon0822@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10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 체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1. 추진목적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별·분야별로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협약 체결

2. 체결개요

- (대상 항만) 국가관리무역항
- (체결대상 업종)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 공급업
 - * (항만하역업) 제3자의 수요에 의한 하역이 아닌 자기화물 처리부두와 민자부두 및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두는 체결대상에서 제외
- (체결 기간) '27. 1. 1. ~ '29. 12. 31. (3년)
- (체결 규모) 예선업(17개사), 항만하역업(18개사), 줄잡이업(15개사), 화물고정업(15개사), 선박연료공급업(12개사)
 - * 체결규모는 각 항만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항만별 항만운영협약 체결 계획>

구 분	합계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 공급업	지정부두
계	77	17	18	15	15	12	
부산항	14	3	3	3	3	2	컨테이너, 벌크부두
인천항	7	2	2	1	1	1	컨테이너, 벌크부두
여수·광양항	9	2	2	2	2	1	컨테이너, 벌크부두
마산항	5	1	1	1	1	1	벌크부두
울산항	7	1	3	1	1	1	액체부두, 벌크부두
동해·묵호항	5	1	1	1	1	1	벌크부두
군산항	5	1	1	1	1	1	벌크부두
목포항	5	1	1	1	1	1	벌크부두
포항항	5	1	1	1	1	1	벌크부두
평택·당진항	9	2	2	2	2	1	벌크부두
대산항	6	2	1	1	1	1	벌크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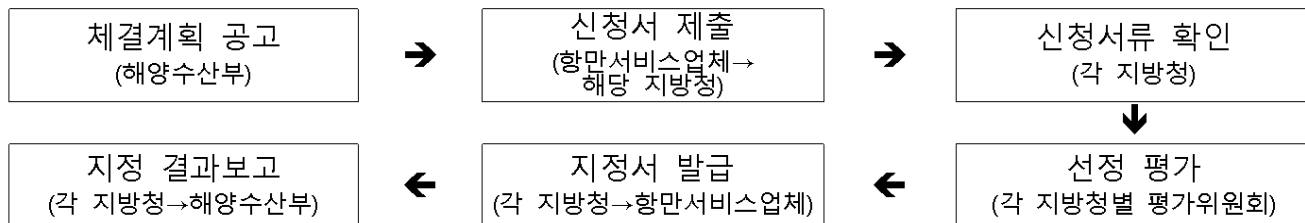
* 국가필수도선사(78명)을 포함할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는 155개사임

3. 대상 자격기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2조제1항)

사 업 자	자 격 기 준
① 예선업	가. 5년 이상 해당 항만에 등록된 사업자일 것 나. 해당 항만에서 보유한 예선이 총 3천마력 이상일 것 (1천마력급 이상 1척을 포함한다) 다.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② 항만하역업	가. 5년 이상 해당 항만에 등록된 사업자일 것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받은 항만하역사업 등록일부터 연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전용사용 부두를 확보(전용임대)하고 있을 것 다.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③ 줄잡이업, ④ 화물고정업	가. 5년 이상 해당 항만에 등록된 사업자일 것 나. 상시 작업자가 5명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⑥ 선박연료 공급업	가. 5년 이상 해당 항만에 등록된 사업자일 것 (단,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 나. 연료공급선 보유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4. 체결절차 및 일정

○ 체결 절차



○ 세부 일정

추진계획	추진일정	주관부서
○ 신청서 접수	'26.10.23.~11.20.	각 지방해양수산청
↓		
○ 항만운영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26.11월	각 지방해양수산청
↓		
○ 신청사항 확인 및 평가	~'26.12월 상	각 지방해양수산청
↓		
○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 발급	'26.12월	각 지방해양수산청
↓		
○ 지정 결과 보고	'26.12월	각 지방해양수산청

5. 체결업체 의무 및 지원

- (의무) 협약체결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 종사명령(교육훈련, 소집훈련 등 포함)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비상사태 등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업체의 파산, 재난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함

- (지원) 항만하역업에 대해서는 연간 항만시설 사용료의 10% 감면.
다만, 감면액이 5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5억원으로 하며,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해 일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 운영을 통해 일정금액 지원
- * 예선업·선박연료공급업 : 3천만원 / 줄잡이업·화물고정업 : 2천만원(연간)

6. 신청업체 평가

- (평가대상)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업체
- (평가항목) 대응역량, 경영·운영, 비상대책, 정책협력 및 가·감점 등
5개 분야 및 세부지표를 평가

평가항목	주요내용	배점
대응역량	비상사태 발생시 해운항만 기능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항만운영업체의 시설·인력 등 대응역량을 평가	40점
경영·운영	안정적인 제도 운용과 제도와의 적합도 파악 등을 위해 항만운영 업체의 재무건전성과 운용 여건을 평가	35점
비상대책	비상사태시 항만운영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계획 확인을 위해 평시 조직 및 인력 운용, 시설 보수·보강, 투자계획, 종사원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평가	15점
정책협력	부두통합, 친환경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순응도 평가	10점
가·감점	항만운영업체의 비상대응 활동실적과 노력에 대해 가점 부여, 항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10점

- (평가기간) 평가시점 직전년도 연간 실적
- * 세부 평가항목 중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 (평가위원회) 각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지표별 산술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순위표를 작성하고, 평가 순위로 상위업체부터 해당년도 항만별 항만운영협약체결 소요만큼 사업자 선정

* 항만운영협약업체의 해약 등 취소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체 선정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신청한 지표는 점수 미부여
- 산출한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대응역량, ②경영·운영, ③비상대책 및 ④정책협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
-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미이행시 감점 또는 점수 미부여)
- 항만하역부문은 항만별 주요 처리화물 취급부두를 최소 1개 이상 선정. 다만, 주요 처리화물 대부분이 민자부두 또는 자가화물 처리 형태로 운영되는 항만의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선박연료공급업 및 예선업체는 전국 항만별로 다수 등록된 경우라도 1개의 항만에만 신청 가능
- 동일 항만 내에서 1개 업체가 복수의 업종으로 협약 체결 불가능
- 세부평가 항목 중 상대평가 지표는 평가등급 배분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별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을 합산 반영
- 평가 기준 관련 미열거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

- **(평가절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1차) 협약 신청업체 자격기준 충족 등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확인(각 지방청)→(2차) 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3차) 자료 확인 등을 위한 현장실사(필요시)

7.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26.10.23(금) 09:00부터 ~ '26.11.20(금) 18:00까지
- (제출장소 및 방법)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①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별지 서식 1) ②업종별 등록증
③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⑤기타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계획공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알림·뉴스-알림」 참고
- (문의처)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국가필수해운담당) 또는 해양
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773-5772)

8. 기타사항

-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영협약 평가를 거쳐 선정된 체결 업체
에게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별지 서식 2)를 발급
-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협약 해약 사유>

협약 해약 사유	비 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해약
2. 업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연해약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업종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회 보완 지시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회 보완 지시
6. 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됨

<별지 서식 1>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협약 분야		
	협약 기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선정 및 체결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별지 서식 2>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분 야:

명 칭:

소재지:

기 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의 사업자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특별시장·○○광역시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붙임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업체 세부 평가지표

1 예선업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110점)
①대응역량(40점)		1. 연간 매출액	10
		2. 예선 마력별 보유 현황	10
		3.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10
		4. 상시 근로자 수	10
②경영·운영(35점)		5. 영업이익률	5
		6. 부채비율	5
		7. 산업재해율	10
		8. 운용 예선 평균 선령	10
		9. 사업운영기간	5
③비상대책(15점)		10. 비상대응계획(시설 사용·운용, 투자계획 포함)	15
④정책협력(10점)		11. 친환경 투자, 일자리 창출	10
⑤가·감점 (±10점)	가점	12. 기관표창(4급 기관장 이상)	±10
		13. 해양사고 구난·구조 참여실적	
		14. 해양오염방제 참여실적	
		15. 교육훈련 참여 실적	
	감점	16. 항만질서 위반 실적	
		17. 자료제출 지연 및 보완 미이행	

2 항만하역업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110점)
①대응역량(40점)		1. 연간 매출액	10
		2. 하역시설 보유 현황	10
		3.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10
		4. 상시 근로자 수	10
②경영·운영(35점)		5. 영업이익률	5
		6. 부채비율	5
		7. 산업재해율	10
		8. 부두 운영기간	15
③비상대책(15점)		9. 비상대응계획(시설 사용·운용, 투자계획 포함)	15
④정책협력(10점)		10. 부두통합, 친환경 투자, 일자리 창출	10
⑤가·감점 (±10점)	가점	11. 기관표창(4급 기관장 이상)	±10
		12. 교육훈련 참여 실적	
	감점	13. 항만질서 위반 실적	
		14. 자료제출 지연 및 보완 미이행	

3 **줄잡이업/화물고정업**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110점)
①대응역량(40점)		1. 연간 매출액	10
		2. 고용인력 평균 근속연수	10
		3.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10
		4. 상시 근로자 수	10
②경영·운영(35점)		5. 영업이익률	5
		6. 부채비율	5
		7. 산업재해율	10
		8. 사업운영기간	15
③비상대책(15점)		9. 비상대응계획(시설 사용·운용, 투자계획 포함)	10
④정책협력(10점)		10. 친환경 투자, 일자리 창출	10
⑤가·감점 (±10점)	가점	11. 기관표창(4급 기관장 이상)	±10
		12. 교육훈련 참여 실적	
	감점	13. 항만질서 위반 실적	
		14. 자료제출 지연 및 보완 미이행	

4 **선박연료공급업**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110점)
①대응역량(40점)		1. 연간 매출액	10
		2. 선박연료공급선 보유 현황(총톤수 합계)	10
		3.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10
		4. 상시 근로자 수	10
②경영·운영(35점)		5. 영업이익률	5
		6. 부채비율	5
		7. 산업재해율	10
		8. 운용 선박연료공급선 평균 선령	10
		9. 사업운영기간	5
③비상대책(15점)		10. 비상대응계획(시설 사용·운용, 투자계획 포함)	15
④정책협력(10점)		11. 친환경 투자, 일자리 창출	10
⑤가·감점 (±10점)	가점	12. 기관표창(4급 기관장 이상)	±10
		13. 해양사고 구난·구조 참여실적	
		14. 해양오염방제 참여실적	
		15. 교육훈련 참여 실적	
	감점	16. 항만질서 위반 실적	
		17. 자료제출 지연 및 보완 미이행	